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논산시의회 의장



2022년 1월 13일

논산시의회규칙 제5호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행정자치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